

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

당사(주식회사 세라젬코리아)는 2017년 7월 4일 개최한 이사회(간이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)에서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세라젬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7년 7월 4일부터 2017년 8월 4일까지 당사의 본점(전화번호: 041-529-4245, 제출처: 재경팀)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또한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동일기간에 주권을 당사의 본점(전화번호: 041-529-4245, 제출처: 재경팀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7월 4일

주식회사 세라젬코리아
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0

대표이사 이 규 철